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확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 서구의회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2000. 12. 7 시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시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 조정규모
 - 광천동에서 내방동으로 편입 : 57필지 56,449m²
 - 화정동에서 내방동으로 편입 : 10필지 798m²
 - 화정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 : 17필지 68,623m²
 - 화정동에서 농성동으로 편입 : 216필지 88,538m²
 - 화정동에서 쌍촌동으로 편입 : 4필지 11,815m²
 - 내방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 : 313필지 52,435m²
 - 풍암동에서 화정동으로 편입 : 3필지 734m²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관련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법정동 및 그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되, 다만 시·군·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3항)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구역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요청과 법정 승인 등 관련 사전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는 점과, 의회에서 경계 변경을 승인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